

(20 년도)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(갑)

(3쪽 중 제1쪽)

납세의무자성명 (법인명 또는 단체명)		주민등록번호 (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)	
① 1세대 1주택자	[] 여 [] 부	②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	[] 여 [] 부
③ 배우자 성명		배우자 주민등록번호	
④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청	[] 1세대1주택자 판단 시 [] 세율 적용 시 [] 해당없음	⑤ 법인 세율 구분 ⑥ 세율 적용 구분	[] 단일세율 [] 일반 누진세율(법인 구분:) [] 기본세율 [] 종과세율

(단위: m^2 , 원)

구분	해 당 연 도(년)		직 전 연 도(년)	
	감면 후 공시가격	부과된 재산세액	감면 후 공시가격	표준세율 재산세액
합계				

[illegible]

작 성 방 법

1. ① 1세대 1주택자: 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선택합니다.
2. ②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: ① 1세대 1주택자 여부가 “여”인 경우로서 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 여부를 선택합니다.
3. ③ 배우자 성명·배우자 주민등록번호: ②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1주택자 여부가 “여”인 경우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4. ④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청: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선택합니다.
 - 가.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: ① 1세대 1주택자 여부가 “여”인 경우로서 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8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주택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1조의2제2항 또는 제98조의9제1항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선택합니다.
 - 나. 세율 적용 시: ① 1세대 1주택자 여부가 “부”인 경우로서 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」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, 다목 또는 바목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선택합니다.
5. ⑤ 법인 세율 구분: 다음 구분에 따라 선택합니다.
 - 가. 단일세율: 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합니다.
 - 나. 일반 누진세율: 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하고, 괄호 안에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[별지 제28호서식]에 따른 법인구분 [“⑧-㉔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법인등(직접공익목적보유)”, ⑧-㉔에 해당하는 경우 “공익법인등(공익목적외보유)”, ②에 해당하는 경우 “공공주택사업자”, ③에 해당하는 경우 “주택조합”, ④에 해당하는 경우 “정비사업시행자”, ⑤에 해당하는 경우 “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등”, ⑥에 해당하는 경우 “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”, ⑦에 해당하는 경우 “중증”] 중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.
6. ⑥ 세율 적용 구분: 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“기본세율”,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“중과세율”을 선택합니다.
7. ⑦ 총면적: 과세대상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총면적을 적습니다. 다만,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총면적 중에서 1구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의 면적을 적습니다.
8. ⑧ 지분율: 토지 및 건물이 공동소유인 경우 각각의 지분율을 적습니다.
9. ⑨ 전용면적: 건물총면적을 적되,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건물총면적 중 전용면적(공용면적은 제외합니다)을 적습니다.
10. ⑩ 주택유형: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주택의 종류(“단독주택”, “다중주택”, “다가구주택”, “아파트”, “연립주택”, “다세대주택”, “기숙사”, “다중생활시설”, “노인복지주택” 또는 “오피스텔”)을 적습니다.
11. ⑪ 토지시가표준액·⑫ 건물시가표준액: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만 토지와 건물의 해당연도의 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습니다.
12. ⑬·⑳ 공시가격: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과세기준일(매년 6월 1일) 현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(공시되지 않은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, 공시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가격은 「지방세법」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산정한 가액)을 적습니다.
13. ⑭ 감면율: 해당 연도의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·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서 정한 재산세 감면율을 적습니다.
14. ⑮·㉑ 감면 후 공시가격: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구분하여 다음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.
 - 가.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: ⑬·⑳ 공시가격 × ⑧ 토지지분율 × (1 - ⑭ 감면율)
 - 나.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:

$$\frac{⑬ \cdot ⑳ \text{ 공시가격} \times (⑪ \cdot ⑮ \text{ 토지시가표준액} \times ⑧ \text{ 토지지분율}) + (⑫ \cdot ⑲ \text{ 건물시가표준액} \times ⑧ \text{ 건물지분율})}{(⑪ \cdot ⑮ \text{ 토지시가표준액} + ⑫ \cdot ⑲ \text{ 건물시가표준액})} \times (1 - ⑭ \text{ 감면율})$$
15. ⑯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: 해당 연도의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.
16. ⑰ 부과된 재산세액: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적습니다(다만, 「지방세법」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은 제외합니다).
17. ⑱ 토지시가표준액·⑲ 건물시가표준액: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만 토지와 건물의 직전 연도의 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습니다.
18. ㉒ 표준세율 재산세액: 다음의 주택분 재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{[재산세 과세표준(= ㉑ 공시가격 × ⑯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) × 세율 - 누진공제액] × (㉑ 감면 후 공시가격/㉑ 공시가격)}을 적습니다.

[주택분 재산세 세율표]

과 세 표 준	세 율	누진공제액
6천만원 이하	0.1%	0원
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0.15%	30,000원
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0.25%	180,000원
3억원 초과	0.4%	630,000원

(20 년도)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(을)

(3쪽 중 제3쪽)

[illegible]

※ 이 서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(갑)의 주택 명세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.

297mm×210mm(백상지 80g/m² 또는 중질지 80g/m²)